

6.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(案)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7-79號 1997. 4. 1

주요 골자

- 가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·군·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.
- 나. 납부의무자가 매입가격을 소명함으로써 그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는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함.
- 다.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됨으로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도록 함.

주택회보